

'26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시행 자체 기준

1. 공통 기준

- 사업 참여대학의 학생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 -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(대학원생 제외)
 - 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('86.1.1. 이후 출생)로 미혼인 자
 - 당해 학기 학자금 신청 시,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
 - * 자격 기준은 2026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름
 -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
 - * 사망 또는 부양관계단절 등 부모 주소정보가 모두 없는 경우 원거리 심사 생략(면제)
 -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순천제일대학교를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

<대학 소재지와 부모 주민등록지 간 원거리 인정기준>

학생 소속대학 소재지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부모 모두의 주소지가 아래와 같이 원거리 미인정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거리 인정

- (광역 교통권 이내) 각 권역별 범위 이내의 지역 간에는 원거리 인정 불가
- (광역 교통권 외) 각 권역별 범위 외 지역 간에는 시·군을 기준으로 구분
 - 시: 대학 소재지가 속한 시 기준, 인접한 시까지 원거리 인정 불가
 - 군: 대학 소재지가 속한 군 기준,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 원거리 인정 불가
- ※ 광역교통권 권역별 범위는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의 범위로 함
- ※ 단, 원거리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통학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(교량 또는 터널 등이 미설치되어 차량 통행이 불가한 도서지역에 부모 거주 등) 학생이 대학에 소명서를 제출하고, 대학 및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

-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

구분	성적 기준
신·편입생, 재입학생	○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
재학생	○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(70/100점) 이상을 획득한 자 -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,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-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성적산출(백점 환산 점수) ○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

○ 지원 제한

- 비정상적인 학사관리, 공문서 또는 사문서 위·변조 등의 방법으로 주거안정장학금을 부정 수급한 대학 또는 학생은 주거안정장학금 환수 및 학자금 지원 제한(최대 2년 범위 내)
 - ※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(대학), 국가장학금관리위원회(학생) 심의를 거쳐 제한
 - ※ 공공재정환수법 시행('20.1.1.)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제제부가금 부과 가능
- 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자

2. 선발 기준

- 공통기준을 갖춘 정규학기 등록(예정)자로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자
 - * 당해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
 - * 성적 기준 충족자(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, 평균 70점 이상 *계절학기 미포함)
 - * 신입생은 직전학기 성적취득 요건 제외(배점기준 반영)
 - * 주민등록상 부모 모두의 주소지가 원거리 인정 기준에 해당 시
 - ※ 광역 교통권 기준에 의한 미인정 지역

대학 소재지		부모 주소 원거리 미인정 지역
전남	순천시	순천시, 여수시, 광양시

- 중복지원 불가: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 수혜자
 - ※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, 청년 월세 한시지원 등

3. 지원 기준(대학 자체 기준)

- 교부된 사업비(장학금)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지원대상자(장학생)가 발생하는 경우, 아래 기준에 따라 우선 지원
- 우선지원 기준

순위	기준	내용
1순위	주거형태	○ 주거형태에 따른 주거비용 부담 정도 - 비(非)기숙사생, 기숙사생 순으로 지원
2순위	소득구간	○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결과 확인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순으로 지원
3순위	재학구분	○ 대학 정착을 위한 신입생 우선 지원 - 당해학기 신입생, 재학생 순으로 지원
4순위	성적우수	○ 직전학기 성적 우수자 - 성적(점수평균) 높은 순, 동률 시 이수학점 높은 순으로 지원

○ 지원제외 기준

기준	내용
학적변동자	○ 3월, 9월 학적변동(자퇴, 제적, 휴학 등) 발생자는 장학금 지원 제외 ※ 위의 기간 이외에 학적변동이 발생하는 경우, 학적변동일까지 발생한 주거비용에 대한 장학금 지급 가능. 단, 수혜횟수가 누적되며, 주거안정장학금 반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.
계절학기 수강 취소자	○ 계절학기 수강 중 중도 취소자 지원 제외 ※ 계절학기 기간동안 발생한 주거비용에 대한 장학금 지급 불가
서류제출 기간 미준수자	○ 장학금 지급을 위한 서류제출 기간 미준수 시 지원 제외 ※ 지급요청서, 소명자료 제출 기간 미준수 시 지급 불가

4. 지급 요청

- 장학금 지급 신청을 위해서는 월별 지출된 주거비용에 대한 지출내역을 정리, 지급요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
- 장학생은 지급요청시 작성한 비용에 대한 입증자료(영수증 등)를 장학금 지급일로 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, 대학이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하여야 함
- 지급요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, 소명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

5. 장학금의 지급

- 지급원칙: 월별 발생한 주거비용에 대한 장학금은 익월(다음달)에 지급
※지원대상자 확정 후 익월(다음달) 정액 지급
- 지급금액: 월 20만원 한도 *지급액 이월 불가
- 지급방법: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된 장학생 계좌로 입금
- 지급일정: 월별 지급요청서 검토 후 익월(다음달) 지급

구분	1학기				계절학기		2학기				계절학기	
대상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1월	2월
지급	4월	5월	6월	7월	9월		10월	11월	12월	1월	2월	